



강 남 구 의 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 등록기준일 : 2015. 12. 31.**
- 등록대상 : 강남구의회 의원 20명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법정 신고대상자의 재산변동내역
- 주요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 1. ~ 2. 29.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2개월 내 신고
1. 1. ~ 1. 30.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 (기존 허가자 제외)	2. 5.(금)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 결정 통보
1. 1. ~ 2. 29.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허가 받은지 3년째 되는 대상자로 명단 별도 통보)	2016년 상반기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허가여부 결정
1. 15.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 자료 회신일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1. 15. ~ 1. 20.	금융 정보 회신자료 검증	
1. 21. ~ 2. 29.	금융·부동산 회신정보 활용 재산 신고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미동의자는 금융정보 회신과 관계없이 재산신고
 ※ 모든 재산신고서는 가급적 '16. 2. 15.까지 조기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 등 접속 불편)

- 붙임 1.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PETI 입력방법 등) 1부
 2. 2016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신청서 포함) 1부
 3.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강 남 구 의 회 의 장

수신자 김명옥 의장, 송만호 부의장, 이재민 운영위원장,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 오원진 의원, 양승미 의원, 이경옥 의원, 김병호 의원, 이재진 의원, 이관수 의원, 한용대 의원, 최민숙 의원, 최중현 의원, 문백한 의원, 이호귀 의원, 김광심 의원, 이인화 의원, 서경원 의원, 여선웅 의원

주무관 윤석호 의정팀장 홍남기 구의회사무국장 01/05 이동호

협조자

시행 강남구의회-111 () 접수 ()
 우 062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 (대치동) /
 전화 02-3423-8108 /전송 02-3423-8926 / ys7ho@gangnam.go.kr / 대시민공개